

2024년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'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'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[혁신제품 지정 기업](#)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6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

□ (연장 개요)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구 분	연 장 기 간	해 당 대 상
1차연장	1년	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2차연장	2년	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※ 관련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33665호) 제33조 제2항
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(기획재정부훈령 제672호) 제6조의2
- 「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 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96호) 제14조의2

○ 금회 공고건은 '1차 연장' 사항에만 해당

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(1차 연장)

□ (대상)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*가 도래되는 혁신제품**을 보유한 기업

*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'24. 9. 23.

** 금회 신청대상 혁신제품 현황 : '별첨' 참조

□ 혁신제품 1차연장 추진절차

- ① 신청서류 접수
- ② 1차 연장 부합여부 검토
-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
- ④ 1차 연장 승인 * '24.7월 내 (예정)

③ 신청 자격요건 (1차 연장)

□ 1차 연장 신청대상

○ 아래의 '가'항 부터 '라'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- 가.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 나.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
 다.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
 라.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구분	항 목	세 부 내 역
가	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(최소 1건 이상)	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
나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(최소 1건 이상)	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
다	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○ 혁신조달 경진대회 ○ 중앙관서 시상·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 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
라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○ 지정 후 조달적합성 절차로 인한 지정 인증서 발급지연에 한함 (舊 FT3 지정제품 한정,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) ○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고시 대상(중기부) 제품으로써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○ 기타 불가피한 사유 (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)

○ 다만,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
가.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
나.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
다.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
구분	항 목	세 부 내 역
가	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	○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
나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○ 유형 I (舊 FT1) : 혁신제품에 적용된 R&D 결과물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○ 유형 I (舊 FT3) :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의 기간만료, 등록취소, 양도, 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
다	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○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4 신청 서류 [1차 연장]

○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번호	구 분			필수여부	비고
1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 공문			필수	-
2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			필수	붙임1
3	서류제출 신뢰서약서			필수	붙임2
4	신청자격 증빙자료 (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)	3-1 ^{비고1}	납품실적목록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	해당 시	붙임3
		3-2 ^{비고2}	구매계약서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	해당 시	-
		3-3 ^{비고3}	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	해당 시	해당 혁신제품으로 받은 경우만 인정
		3-4 ^{비고4}	구매확약서	해당 시	붙임4
5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			필수	-
6	관련 특허 증빙자료(특허등록원부 및 명세서) * 지정신청 당시 제시한 특허에 대한 자료(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)			필수	-

비고1)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·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

(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 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)

비고2)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

비고3)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

비고4)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

☞ 舊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

☞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써,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

5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 [1차 연장]

□ 신청기간 : 본 공고일로부터 2024. 7. 1.(월) 18:00까지

※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,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.

※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,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 드립니다.

□ 신청방법 : 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아래 유형별로 제출

구 분	지정유형	접수(신청)방법
(분야1) 연구개발 혁신제품	우수연구개발	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(https://hub.kaia.re.kr)를 통해 제출 (기업참여 → 혁신제품 지정신청 게시판)
(분야2) 혁신성 인정제품	①교통신기술	
	②물류신기술	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(jbs92@ex.co.kr 또는 nam1793@ex.co.kr)
(분야3)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	③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	
	①스마트챌린지	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(https://hub.kaia.re.kr)를 통해 제출 (기업참여 → 혁신제품 지정신청 게시판)
	②리빙랩(드론)	
	③리빙랩(ITS)	

□ 문 의 처

지정유형	평가기관(담당부서)	담당자	이메일(연락처)
(분야1) 우수연구개발 (분야2) ❶교통신기술 ❷물류신기술 (분야3) ❶스마트챌린지 ❷리빙랩(드론) ❸리빙랩(ITS)	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(사업화지원Hub실)	김민혁 선임연구원	mhkim07@kaia.re.kr (031-389-6371)
(분야2) ❸중소기업 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업체)	한국도로공사 (통합기술마켓추진단)	김선엽 차장	nam1793@ex.co.kr (054-811-2435)
		정범수 대리	jbs92@ex.co.kr (054-811-2434)

※ 전화에 앞서, 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여 이메일로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별첨

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관련 신청대상 혁신제품 현황

□ 대상현황 : 총 14건

○ 지정기간 : '21. 9.24. ~ '24. 9.23. (3년)

구분	혁 신 제 품 명	혁신기업	지정번호	지 정 분 류
1	항공기 착륙 유도지원용 시각정보 제공 시스템	(주)안세기술	2021-416	중소기업기술마켓 (SOC 공공기관 협의체)
2	LED 모듈 고장검출이 가능한 유도로 안내등(TGS)	유양산전(주)	2021-417	"
3	신속시공형 기능성 도로보수용 아스팔트 혼합물	(주)시티오브테크	2021-418	"
4	유충산란 억제 수면파동 발생기 (파동형 스크 및 결빙방지장치)	(주)리엔텍	2021-419	"
5	문 높이 상하 조절기능이 있는 손끼임 방지 장치	(주)다모아 메탈라인	2021-420	"
6	대기오염물질 배출 억제 미끄럼 방지 코너 화전시 소음을 줄인 친환경 바닥재	(주)한국콘젝트 시스템	2021-421	"
7	내진기능의 모듈형 콤팩트 배전반	(주)이에스아이	2021-422	"
8	전력 절감형 열선 제어함	육송(주)	2021-423	"
9	도로 노면파손이 없고 제설공백 삽입교체를 최소화한 제설용 고강도 고무삽날	(주)동일인더스트리	2021-424	"
10	터널 신축 수축이음부의 기존 액상의 실런트 작업 대체 매립실런트	신축산업(주)	2021-425	"
11	교량 거더의 변형 보정 시스템	(주)대련건설	2021-426	"
12	탈수설비 효율 상승 및 운영비 감소를 위한 약품분사형 인라인 고속혼화장치	(주)웅신이앤티	2021-427	"
13	강관의 선단부 확대 장치를 이용한 내진 파일	(주)스페이스 테크놀로지	2021-428	"
14	자동화 계측기의 변위상태를 실시간 LED신호등으로 전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	엠에이치 컨설턴트(주)	2021-429	"

※ 1~14번 제품(중소기업기술마켓) → '한국도로공사'로 서류 제출

[붙임1]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
혁신제품 지정기간 (1차연장) 신청서

혁신제품명							
혁신제품 지정번호				혁신제품 지정기간			
회사개요	회사명				법인번호		
	주 소	(□ -)					
	행정 담당자	직위/성명			부 서 명		
		전화번호			FAX번호		
기간연장 신청사유	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신청' 사유					해당여부
	1	지정기간 동안 국·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					()
	2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					()
	3	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				()
	4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				()
기간연장 제외여부	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제외' 사유					해당여부
	1	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					()
	2	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					()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24 . . .
업 체 명 :
대표자명 : (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 하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[붙임3] 납품실적목록

※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(예 :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,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)에 한함

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

번호	물품식별 번호	규격명	수량	금액(원)*	납품처		납품일자	비고
					국내/해외	기관명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*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								

주) 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,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**물품
납품실적 확인서**와 **세금계산서**, **수출입실적증명서**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
첨부할 것 (단,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)

[붙임4] 구매확약서

혁신제품 구매확약서

■ 동 자료는 혁신제품 연장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										
구매확약 수요기관	기관명									
	담당자명									
	연락처									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 <table><tr><td>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</td><td>☐ 동의함</td><td>☐ 동의하지 않음</td></tr><tr><td>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?</td><td>☐ 동의함</td><td>☐ 동의하지 않음</td></tr></table>			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	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		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								
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?	☐ 동의함	☐ 동의하지 않음								
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,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. <table><tr><td>혁신제품</td><td>(혁신제품 지정번호) (혁신제품명)</td></tr><tr><td>기업정보</td><td>(기업명) (사업자등록번호)</td></tr><tr><td>구매확약 희망규격</td><td>(규격명) (물품목록번호)</td></tr><tr><td>활용목적</td><td>자율기재</td></tr></table>			혁신제품	(혁신제품 지정번호) (혁신제품명)	기업정보	(기업명) (사업자등록번호)	구매확약 희망규격	(규격명) (물품목록번호)	활용목적	자율기재
혁신제품	(혁신제품 지정번호) (혁신제품명)									
기업정보	(기업명) (사업자등록번호)									
구매확약 희망규격	(규격명) (물품목록번호)									
활용목적	자율기재									
※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										
년 월 일										
기관명 :		기관장명 : (인)								
국토교통부장관 귀하										